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1237 제안년월일 : 2019년 12월 19일 제 안 자 : 운 영 위 원 장

1. 제안이유

○ 의원이 의회에 신고해야 하는 금전거래의 기준과 의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하는 외부강의의 횟수를 구체화함으로써 의회의 청렴도를 향상 시키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의원이 직무관련자와 '300만원'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을 경우 사적이 해 신고를 하도록 함(안 제4조제1항제7호).
- 나. 의원이 대가를 받고 '월 3회'를 초과해 외부강의를 수행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(안 제14조제8항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해당사항 없음.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.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7. 의원이 직무관련자와 3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경우

제14조제8항 중 "의장이 별도로 정하는 일정 횟수"를 "월 3회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햀 개정안 혀 제4조(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) ① 의원은 안 제4조(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) ① 의원은 안 건심의 등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건심의 등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장 및 자신이 소속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장 및 자신이 소속 된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된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서면(전자문서를 포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서면(전자문서를 포 함한다. 이하 같다)으로 신고해야 한다. 이 함한다. 이하 같다)으로 신고해야 한다. 이 경우 의원은 스스로 안건심의 등을 회피할 경우 의원은 스스로 안건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. 수 있다. 1.~6. (생략) 1.~6. (현행과 같음) 7. 의장이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전 7. 의원이 직무관련자와 300만원 이상의 금 거래가 있는 자 전거래가 있는 경우 8.~10. (생략) 8.~10. (현행과 같음) ②~⑥ (현행과 같음) ②~⑥ (생략) 제14조(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) ① 제14조(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) ① ~(7) (생 략) ~(7) (현행과 같음) ⑧ 의원은 의장이 별도로 정하는 일정 횟수 ⑧ ----- 월 3회----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 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 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